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0. 13

다. 상 정 일 자 : 2003. 10. 13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정 이 환

나. 제안사유

- 집중하고 있는 묘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장사시설에 관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 화장, 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 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납골유도
-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 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련된 사업 등

○ 묘지 등의 수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 묘지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장사시설 및 묘지수급계획 추진시 필요한 경우 장묘문화대책추진자문 및 평가기능수행,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수 있음

○ 묘지의 일체조사 (안 제6조)

- 묘지의 일체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 영역을 의뢰 할 수 있음

○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안 제 7조)

-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 산사대,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안 제11조)

- 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읍·면 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음

○ 공설묘지 및 공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등의 설치 (안 제12조)

-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함

○ 민간자본의 유치(안 제13조)

-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음

○ 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14조~안 제 19조)

- 구 성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관련기관단체등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기 능 : 공설장사시설의 추진계획의 검토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공

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그 밖에 공설장사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심의

- 임 기 : 2년 ,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할 기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제정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해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이며 아울러,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묘지 사용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 안제9조(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제1항에서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등의 부과와 징수의 경우에는 의회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어, 사용료의 결정을 군수가 아닌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안제12조의 제목 '(공설묘지 및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등의 설치)'중에 '공설묘지 및'은 불필요한 부분으로서 삭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기타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의결”

첨 부 :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 ①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기조사 전문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설 화장장 및 납골 시설등의 설치) ①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군의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 ①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u>군수가 결정한다.</u></p> <p>1 ~ 4 - 생략 - ② ~ ③ - 생략 -</p>	<p>제9조(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 ①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u>조례로 정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공설묘지 및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등의 설치) ①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 ③ - 생략 -</p>	<p>제12조(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등의 설치) ①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 ② - 생략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u>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u> 및 <u>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u>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14조(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u>관계공무원, 군의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u> 및 <u>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u>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